

제 1313 호  
1986. 9. 1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열 보 원  
편집인: 공보관 이광우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신경호	정재호	김재호	공보계장
장수영	정재호	김재호	토지계장
서리화	김의기		

# 시보

## 차례

### ◎ 고 시

- 제 654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 개정 ..... 3  
제 655 호 :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제한고시 개정 ..... 5  
제 657 호 : 도시 체치 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 변경 ..... 7

### ◎ 공 고

- 제 500 호 :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 실무 ..... 8  
제 505 호 :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 영업 정지 ..... 8  
제 507 호 :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 9

〈이면지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구 공고

- 강동구 제 84호 : 관인사용승인 ..... 9
- 동대문구 제 43호 : 직인개각 ..... 10

◎ 사 령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13-11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고 영 주	동작구파견 정파조전수조사요원 ('86. 9. 9-'86. 11. 30)	난지 도쓰레기 종합처리장	지방기계장(7등급)
최 효 신	강동구파견		지방기계원(8등급)
고 영 기	"		
주 용 환	강남구파견		
최 상 철	"		
박 영 철	"		
문 영 원	"		지방기계원(7등급)
김 사 중	"		지방기계원시보(9등급)
윤 석 화	"		
윤 재 순	"		
곽 수 섭	강동구파견		
이 영 춘	"		
김 성 환	"		
정 영 택	동작구파견		
이재덕	"		
이승영	강동구파견		
김연오	강남구파견		
장 현 목	"		
오 광 톡	"		
박 현 규	"		지방기계수사보(10등급)

◎ 1986년 9월 10일

령 제 39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우종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사보에 입함. 2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영창.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사보

13-4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공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승객이 승차한 상태로 금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제자의 운전자는 타인의 유도를 받거나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시 경음기(후진밸러디 포함)를 울려서는 아니된다.	17. 2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식자전거는 강우·강설로 노면이 미끄러울 때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1. 제자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축단·30미터 이내에서는 앞지로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측방을 통과하여 그 앞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18.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자동차의 후면유리 좌측 하단에 "초보운전"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라 혹은 운전경험이 없는자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로 한다.
12. 제자의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1) 한종류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면허를 새로 취득한 자.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 자.
13. 제자의 운전자는 정지하였다가 전진할 경우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이라 함은 취득후 계속 운전한 기간을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을 말한다.
14.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장표시판(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정차하여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승강구의 문을 열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초보운전 표지판은 세로 1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아크릴로 제작하여 붙이고 떨 수 있게 하여 밤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표시한다.
15.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출발할 때 앞에서 정차한 다른 여객자동차를 앞설려 가서는 아니된다.	
16.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제 1313 호 시

보 1986.9.10 13-5

19. 동절기 (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에는 삽, 꼭챙이, 모래주머니 ( 버스, 화물차, 대형특수차는 5톤인 5개이상, 택시, 임승 3/4 톤 이하의 화물차는 5톤인 2개이상 ) 및 개인 또는 스노우타이어를 충내하여야 하며,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행 할 때에는 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0. 운전자는 전파를 이용한 자동차 격 세동제어기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86.9.11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86.3.19)는 이를 폐지한다.

## 신·구 조 문 대 비 표

구	신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1-19 생 약	1-19 화 동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77.4.20), 제 254 호 ('82.7.9), 제 541 호 ('85.8.12)는 이를 폐지한다.	20. 운전자는 전파를 이용한 자동차 원격세동제어기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21. 이 고시는 1986.9.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86.3.19)는 이를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고시제 655 호

1986. 9. 10

서울특별시장

##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 고시 개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 6조, 제 1 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 제한은 차종별, 요금별 시간별,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통행 제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 제한은 차종별, 요금별 시간별,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제 1313 호 시

보 1986.9.10

가) 제한내용			
차 종	제한 시간	통행 제한구역	비 고
1.5톤미만 화물자동차	07:00~10:00	도심권 및 부도심권	
1.5톤이상 3.5톤미만 화물자동차	07:00~10:00 18:00~21:00	상 동	금요일은 07:00~10:00 12:00~15:00
3.5톤이상 화물자동차	07:00~22:00	상 동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 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도심권	
10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올림픽대로구간 ( 하일동 시제 - 행주대교남단 )	

나. 제한지역의 도심권 및 고도심권  
은 다음과 같다.

(1) 도심권

(가) 시청기점 반경 5킬로미터내  
외 교통약성이 가중되는 반경  
7킬로미터내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

한강대교북단-대전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교동-교차로-  
연희로-홍은교차로-세검정길-  
북악터널-정동길-길음교-미아  
3거리-종암로-종암3거리-회  
기로-휘경교차로-학기교차로-  
시립대입구-진동교차로-신답교  
차로-경찰별설입구교차로-성동  
서앞-한양대교-성동교-삼표풀

재일3거리-성수대교북단-강변2  
로-한남대교북단-강변3로-한강  
대교북단 연결지점간

(나) 고압가스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화물자동차는 성수대교북단-  
강변2로-한남대교북단-강변3로  
-한강대교북단-대전로-양화대교  
북단-양화로-동교교차로-연희로  
-홍은교차로-세검정길-북악터널  
-정동길-길음교-미아3거리간  
도로는 07:00~10:00에 한하  
여 통행을 제한한다.

제 1313 호 시

보 1986.9.10 13-7

## (2) 부도심권(도로)

영등포구 중 도시기능이 집중  
지역인 다음 도로

(가) 한강대교 남단-노량진로-  
구 구청교차로-시장교차로-  
양남교차로 간

(나) 문래교차로-영등포역앞-구  
구청앞 교차로 간

(다) 시장교차로-영등포역앞 간

(라) 구 구청교차로-우신국교앞 간

2. (예외규정)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가. 긴급자동차

나. 계한구역내 통행허가증을 소지  
한 자동차

다.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운반 자동차와 장대차  
를 제외한 10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요일 및 공  
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경기로선 화물자동차) 경기로  
선 화물자동차는 도심권 및 부도  
심권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 부 칙

1. (폐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6호(79.4.1)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호(84.2.23)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고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1986.9.11

부터 시행한다.

## ◎ 서울특별시고시제 657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 683호(84.11.23)  
로 시행허가 및 고시 제 148호  
(86.3.12)로 시행허가 변경된 도  
시계획사업(소매시장)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4조 및 통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업 시행허  
가 변경하였기 고시 한다.
- 판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인다.

1986. 9.1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교체동 103-4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소매시장)

- 교체산업용품종합상가

다. 시행 면적 : 35,342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당초 :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건설㈜ 대표 문경일

2) 변경 :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산업㈜ 대표 문경일

13-8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 마. 사업 시행 규모

- 1) 건축면적 : 17,645.59 m<sup>2</sup>  
 2) 건축연면적 : 당초 50,874.76 m<sup>2</sup>,  
     변경 50,886.84 m<sup>2</sup>

바. 사업 시행 기간 : 84.11.29 ~ 86.12.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전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 해당없음

아. 토지 또는 전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해당없음.

## 공 고

## ⑤ 서울특별시공고제 500호

##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증

전기공사업 제30조제5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 되었기 동법제42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 한다.

1986. 9. 10.

서울특별시장

## 다 음

면허 번호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설효일자	사유
200	광원전기 공사	조상래	중구만리동 62-11	'86.9.5	제 2 종 전기 공사업 폐지

## ⑥ 서울특별시공고제 505호

##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영업정지공고

호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

1986. 9. 10.

서울특별시장

## 다 해

면허 번호	업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사유
197	대한엔진 이어링	김영리	관악구봉천 6동 852-2	영업정지30일 (86.9.10 -86.10.9)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1항 위반(기술 자 변경 미신고)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13-9

## ◎서울특별시공고제 507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공고

우리시가 사업시행하여 환지처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납입고지서중  
반송편 고지서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한다.

1986. 9.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지구명: 영동제 1.2지구, 신당

지구, 청량리지구

2.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3. 납부기한: 영동 1.2 지구:

1986년 9월 30일

(신당지구 : 1986년 12월 31일  
(청량리지구 : 1986년 12월 31일)

4. 공시송달사유: 주소 또는 저소불명

5. 공시송달대상자 목록명세: 서울특별시  
구획정리파, 충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도시정비파에 비치하고 열람  
에 공함

6. 기타사항: 공시송달 대상토지 소유자는  
우리시 구획정리파에 와서 고지서를  
제발부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기 바람.

## 구 공 고

## ◎강동구공고제 84호

## 관 인 사 용 승 인 공 고

강동구 잠실제 5동장《민원사무전용》  
관인 및 계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개작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  
칙 제 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6. 9. 10.

강 동 구 경 거

1. 관인장: 강동구 잠실제 5동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계인

2. 사용개시일: '86.9.11

3. 폐기처분일: '86.9.10

## 4. 관인의 인영(폐기 및 개작인)

인	개 작	폐 기
영		
공인명	잠 실 제 5 동 장 관 인 및 계 인	

13-10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 ◎동대문구공고제 43 호

## 직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 2 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동직인 및 제인을

개 각하였기에 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6. 9. 10.

동 대 문 구 창 장

## 1. 직인명

이문제 2동장인(민원사무접수) 및 계인

## 2. 사용개시 및 폐인일자: 1986년 9월 15일

3. 인 영

	개 각자	폐 기
인		
영		

공인명 이문제 2동장직인 및 계인

## 사 령

◎ 1986년 9월 9일자

경 제 393 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위장	동작구파견 평화조선수조사요원 ('86.9.9 ~ '86.11.30)	남지도쓰레기종합 처리장	지방전기장(7등급)
임영우	강남구파견	"	지방기체장(7등급)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0 13-11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고 영 주	동작구파견 정파조전수조사요원 ('86. 9. 9-'86. 11. 30)	난지 도쓰레기 종합처리장	지방기계장(7등급)
최 효 신	강동구파견		지방기계원(8등급)
고 영 기	"		
주 용 환	강남구파견		
최 상 철	"		
박 영 철	"		
문 영 원	"		지방기계원(7등급)
김 사 중	"		지방기계원시보(9등급)
윤 석 화	"		
윤 재 순	"		
곽 수 섭	강동구파견		
이 영 춘	"		
김 성 환	"		
정 영 택	동작구파견		
이재덕	"		
이승영	강동구파견		
김연오	강남구파견		
장 현 목	"		
오 광 톡	"		
박 현 규	"		지방기계수사보(10등급)

◎ 1986년 9월 10일

령 제 39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우종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사보에 입함. 2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영창.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사보

13-12 제 1313 호 시

보 1986.9.10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현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원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장(기능적7등급)에 임함. 5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원(기능적9등급)에 임함. 7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원
신대식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장(기능적7등급)
김기현			선원(기능적9등급)

⑤ 1986년 9월 5 일자

령제 39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상우	지방토목기사보에 추서함.	강남구	지방토목기원

⑥ 1986년 9월 8 일자

령제 39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동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전 체"에 처함.	주택개량과	지방행정직7급상당
전승권 송희천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 33조제 1항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 2, 3호 해당)의 규정에 의 거 "정직 1월"에 처함.	판약구 서울의공원 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지방사무원
정해남	"감봉 1월"에 처함.		

제 1313 호 시

보 1986. 9. 11. 10-13

형 제 400 호

◎ 1986년 9월 9일자

성명	발령사항	천부서	직위	직급
국윤호	한강준공행사 현장지휘본부 기동근무를 명함 ('86. 9. 9 - 9. 15)	울림 떠 기획 담당관	체육진흥재단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영복	"	사회지도담당관	사회정책 2 계장	"
김태상	"	보건위생과	식품지도계장	"
최재후	"	청소과	작업관리 1 계장	"
강영호	"	영등포구	총무과장	"
조광치	"	금수과	배수계장	지방토목기과

서 울 특 별 시 장